

- 인터넷에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다 불법!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 신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대표 귀하

(경 유)

제 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931호 (2017.05.30.), -6284호(2017.11.28.) 및 의약외품정책과-5536호(2017.11.29.)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약사법」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및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제가 아래와 같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자재 및 포장공정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 아 래 -

구분	개정일자	시행일자	법률(약사법)	조항
의약품	'16.12.2.	'17.12.3.	제14328호	제56조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제외)	'16.12.2.	'17.12.3.	제14328호	제65조
의약외품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	'17.10.24.	'18.10.25.	제14926호	제65조

3. 또한, 의약외품정책과에서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일인 '17.12.3.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 판매된 제품의 경우 '18.12.2.까지만 유통될 수 있음을 알려왔으니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전성분 표시 관련 질의응답집 1부.

2. 식약처 관련공문 각 1부. 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수신자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팀원 김선욱 팀장 권오현

협조자

시행 의수협2017-12-001 (2017-12-01)

홈 페이지 <http://www.kpta.or.kr>

우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33(마곡동)

전화번호 02-2162-8044

팩스번호 02-2162-8072

e-mail coocoo322@kpta.or.kr